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(경력) 공개채용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4. 3.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1. 채용 분야·인원 및 주요업무

직군	직급 (직위)	분야	인원	주요업무
계			3	
행정	4급 (과장)	법무	1	◦ 법무·지적재산권 관리 업무
		노무	1	◦ 노무 관련 업무
		회계	1	◦ 재무 회계 및 경영 분석 업무

2. 자격요건

○ 전 분야 공통요건

- 임용예정일('19.5.27.)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
- 우리공사 인재상에 부합되는 분 (인성/ 창조성 / 전문성 / Globality)
-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군필자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군복무중인 자는 임용예정일('19.5.27.)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

○ 분야별 요건 <다음 중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>

직군	직급 (직위)	분야	자격요건
행정	4급 (과장)	법무	◦ 변호사 자격 소지자
		노무	◦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
		회계	◦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

3. 가 점

구분	대상 (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	가점
공통	-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	전형단계별 만점의 5~10%
	-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	전형단계별 만점의 3%
	- 본인이 도내고교 졸업자 또는 대학 재학(졸업)자	

※ 모든 가점은 만점의 60% 이상 득점 시 반영하되,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40% 이상 득점 시 가점 부여

4. 전형절차 <※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 입사지원 및 면접 진행>

□ 전형진행 절차



※ 전문자격증 소지자 채용 시 PT면접 면제에 따른 1차(PT) 면접전형 생략

□ 전형별 배수 선발 기준

자격요건 확인 인성검사	역량면접	최종면접	비고
적격자 전원	3배수 이내	1배수 이내	

※ 허위 사실 기재 등에 따른 합격 취소, 임용등록포기 및 퇴직자 결원 충원을 위하여 최종면접 결과 70점 이상 획득자에 한해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 운영 (유효기간: 발표일로부터 6개월)

□ 전형별 합격자 선정 기준

○ 자격요건 확인: 적·부 판정

- 판정기준: 지원분야 자격 적격인 자

○ 인성검사: 적·부 판정

- 적 격: A, B, C, M, X, D 등급 획득자
- 부적격: R, E 등급 획득자

○ 역량면접

- 전형별 합격배수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
- 평가기준: 적합성(조직, 직무, 동기), 신(身), 언(言), 서(書), 판(判)

5. 최종합격자 선정

○ 최종 면접전형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
- 평가기준: 공사인으로서의 사고와 자세, 청렴도 및 신뢰도, 책임감 및 적극성, 협업성 및 희생정신, 용모·예의·품행 등

○ 최종 면접전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

- ①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 순
- ② 제주특별자치도민
- ③ 이전 전형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(역량면접)

6. 공고 및 원서접수

○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9. 4. 3. ~ 4. 15. 18:00까지

○ 접수방법 : 온라인(www.jpdc.co.kr) 접수

- 온라인 원서 접수만 인정 (우편, 이메일, 직접방문 등 불가)

7. 접수서류

-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, 전형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
-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할 수 없음
- 전형별 제출서류

전형	대상	제출서류	비고
역량면접	해당자 (전 분야)	◦ 제주특별자치도민 확인자료 ◦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증명서	가점확인용
		◦ 관련 전문 자격증 사본	자격요건 확인용

※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며,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.

※ 우리 공사는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, 서류 제출 시 반드시 **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**

8. 기타 유의사항

- **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.**
-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,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.
- **지원서 기재 착오·누락, 첨부파일 등록 착오 또는 연락 불능**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- 모집기간 내 1개의 분야만 지원 가능 (이중 지원 시 합격 취소)
-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,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가 가능하여야 함.
-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 시 또는 발령 시 근무부서(직군) 및 근무지 변경 가능
-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등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응시분야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
-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할 수 없음
- 최종합격자가 허위 사실 기재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한 경우 예비 합격자 순으로 임용 여부 결정 가능
-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되, 온라인으로 등록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. (제출서류 반환 요청 시 별첨 서식 작성 후 제출)
-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“채용문의”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(☎ 064-780-3514)으로 문의

※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인재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.

9. 전형일정

구분	일정	비고
공고 및 접수	4.3.(수) ~ 4.15.(월)	18시 마감
인성검사	4.20.(토)	
역량면접	4.26.(금, 예정)	
최종면접	5.3.(금, 예정)	
합격예비자 발표	5.9.(목, 예정)	예비합격자 포함 발표
임용(예정)	5.27.(월, 예정)	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예정 일정이며, 전형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. 매 전형 일정 공고 시 확정·게시함

※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6의2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해임,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별첨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